|  |  |  |
| --- | --- | --- |
| **인터넷 전재 저작권 질서 규율에**  **관한 통지**  국판반발[2015]3호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이 인쇄발부한 <전통 매체와 신흥 매체 융합발전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을 관철 및 집행하고 신문·잡지사와 인터넷 매체의 적법경영 및 성실경영을 유도하며 저작권 협력 매커니즘의 구축과 보완을 촉진시키고 인터넷 전재의 저작권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실시조례>, <정보네트워크 전파권 보호조례>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인터넷 전재 저작권 질서 규율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1. 인터넷 매체는 타인의 작품을 전재함에 있어 저작권 법률·법규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저작권자의 허가를 득하고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며 작가 이름, 작품 명칭 및 작품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 법률, 법규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인터넷 매체는 전 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작품을 전재함에 있어 저작권자가 법에 따라 누리는 기타 권익을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2. 신문·잡지사간에 서로 상대방이 이미 게재한 작품을 전재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즉, 게재된 작품의 저작권자가 전재, 발췌 금지를 표시하지 않는 한 기타 신문·잡지에 해당 작품을 전재하거나 다이제스트, 자료로 게재할 수 있다. 단, 규정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신문·잡지사와 인터넷 매체, 인터넷 매체간에 서로 이미 발표된 작품을 전재하는 경우 전 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며 저작권자의 허가를 득하고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3. 인터넷 매체는 타인의 작품을 전재함에 있어 작품의 내용에 대해 실질적인 수정을 가해서는 아니되며; 포제와 내용에 대해 문자 수정 및 산략을 가하거나 표제와 작품의 본의를 왜곡 수정해서는 아니된다.  4. <저작권법> 제5조에서 시사신문이라 함은 신문, 정기간행물, 라디오 방송국, TV 방송국 등 매체를 통해 보도되는 단순한 사실정보를 지칭하며 이 단순한 사실정보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작권자의 독창적인 노동이 투입된 정보, 기사, 특기, 보도 등 작품은 일절 단순한 사실정보에 속하지 아니하며 인터넷 매체가 전재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가를 득하고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5. 신문·잡지사는 원고 청탁, 투고 등 방식으로 획득한 작품에 대해 저작권자와 사용허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을 허가하는 권리의 유형, 사용을 허가하는 권리가 독점 사용권인지 비독점 사용권인지, 사용을 허가하는 지역범위와 기간, 사용료 기준과 지급방식, 위약책임 및 양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내용을 약정할 수 있다. 신문·잡지사가 해당 권리를 행사하기로 양 당사자가 약정한 경우 인터넷 매체는 해당 작품을 전재함에 있어 신문·잡지사의 허가를 득하고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6. 신문·잡지사는 그 직원과 계약을 체결하여 직원이 신문·잡지사에서의 직무 수행을 목적으로 창작한 작품의 저작권 귀속에 대해 약정할 수 있다. 계약에서 저작권을 신문·잡지사에 귀속시키기로 약정한 경우 신문·잡지사는 저작권 선언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신문·잡지사가 게재한 작품의 저작권 관계를 확정지을 수 있으며, 인터넷 매체가 해당 유형의 작품을 전재하고자 하는 경우 신문·잡지사의 허가를 득하고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7. 신문·잡지사와 인터넷 매체는 사내 저작권 관리제도를 수립 및 완비해야 한다. 업체와 업체의 직원이 저작권을 보유한 작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작품 저작권 정보를 입력하고 타인의 사용을 허가한 작품의 수권방식, 수권기한 등 관련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타인에게 사용을 허가한 작품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권리 출처, 수권방식, 수권기한 등 관련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8. 신문·잡지사와 인터넷 매체, 인터넷 매체간에 저작권 허가계약 등 방식을 통해 인터넷 저작권 협력 매커니즘을 구축하고 전재 작품의 저작권 심사를 강화하며 합리적인 수권가격 시스템을 공동 모색하고 저작권 거래 매커니즘을 보완해야 한다.  9. 각 급 저작권 행정관리부서는 인터넷 매체에 대한 저작권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업계조직이 저작권 보호, 저작권 거래, 자율적인 권리 구제 등 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타인의 작품을 무단전재, 재배포하는 저작권 침해 행위를 엄격히 단속해야 한다.  국가판권국판공청  2015년 4월 17일 |  | **关于规范网络转载版权**  **秩序的通知**  国版办发【2015】3号  为贯彻落实中共中央办公厅、国务院办公厅印发的《关于推动传统媒体和新兴媒体融合发展的指导意见》，鼓励报刊单位和互联网媒体合法、诚信经营，推动建立健全版权合作机制，规范网络转载版权秩序，根据《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实施条例》、《信息网络传播权保护条例》有关规定，现就规范网络转载版权秩序有关事项通知如下：  一、互联网媒体转载他人作品，应当遵守著作权法律法规的相关规定，必须经过著作权人许可并支付报酬，并应当指明作者姓名、作品名称及作品来源。法律、法规另有规定的除外。  互联网媒体依照前款规定转载他人作品，不得侵犯著作权人依法享有的其他权益。  二、报刊单位之间相互转载已经刊登的作品，适用《著作权法》第三十三条第二款的规定，即作品刊登后，除著作权人声明不得转载、摘编的外，其他报刊可以转载或者作为文摘、资料刊登，但应当按照规定向著作权人支付报酬。  报刊单位与互联网媒体、互联网媒体之间相互转载已经发表的作品，不适用前款规定，应当经过著作权人许可并支付报酬。  三、互联网媒体转载他人作品，不得对作品内容进行实质性修改；对标题和内容做文字性修改和删节的，不得歪曲篡改标题和作品的原意。  四、《著作权法》第五条所称时事新闻，是指通过报纸、期刊、广播电台、电视台等媒体报道的单纯事实消息，该单纯事实消息不受著作权法保护。凡包含了著作权人独创性劳动的消息、通讯、特写、报道等作品均不属于单纯事实消息，互联网媒体进行转载时，必须经过著作权人许可并支付报酬。  五、报刊单位可以就通过约稿、投稿等方式获得的作品与著作权人订立许可使用合同，明确约定许可使用的权利种类、许可使用的权利是专有使用权或者非专有使用权、许可使用的地域范围和期间、付酬标准和办法、违约责任以及双方认为需要约定的其他内容。双方约定权利由报刊单位行使的，互联网媒体转载该作品，应当经过报刊单位许可并支付报酬。  六、报刊单位可以与其职工通过合同就职工为完成报刊单位工作任务所创作作品的著作权归属进行约定。合同约定著作权由报刊单位享有的，报刊单位可以通过发布版权声明的方式，明确报刊单位刊登作品的权属关系，互联网媒体转载此类作品，应当经过报刊单位许可并支付报酬。  七、报刊单位和互联网媒体应当建立健全本单位版权管理制度。建立本单位及本单位职工享有著作权的作品信息库，载明作品权属信息，对许可他人使用的作品应载明授权方式、授权期限等相关信息。建立经许可使用的他人作品信息库，载明权利来源、授权方式、授权期限等相关信息。  八、报刊单位与互联网媒体、互联网媒体之间应当通过签订版权许可协议等方式建立网络转载版权合作机制，加强对转载作品的版权审核，共同探索合理的授权价格体系，进一步完善作品的授权交易机制。  九、各级版权行政管理部门要加大对互联网媒体的版权监管力度，支持行业组织在推动版权保护、版权交易、自律维权等方面发挥积极作用，严厉打击未经许可转载、非法传播他人作品的侵权盗版行为。  国家版权局办公厅  2015年4月17日 |